#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39 발의연월일: 2024. 9. 13.

발 의 자:이상식・이기헌・김문수

조인철 • 조정식 • 윤준병

임호선 · 황운하 · 모경종

서미화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개인정보보호법」개정으로 "개인정보의 국외 이전"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·조약·국제협정에 규정이 필요해졌음.

특히 긴급공조사안, 해외 사건 사고 대응 시 인터폴 등 치안공조 체제 및 각국 법집행기관 등과의 국제공조도 중요해진 만큼 개인정보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.

이에 따라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상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국민의 신 뢰 확보와 원활한 경찰 직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(안 제8조의 4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4(개인정보의 국외이전)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8 조의3에 따른 외국 정부기관,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, 국제협력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(조회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)·처리위탁·보관 등 이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, 범위,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8조의4(개인정보의 국외이전)
	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
	장은 제8조의3에 따른 외국 정
	부기관,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
	환, 국제협력 활동 등을 위하여
	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
	로 제공(조회되는 경우를 포함
	한다)ㆍ처리위탁ㆍ보관 등 이
	전할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
	외 이전의 기준, 범위, 절차 및
	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
	통령령으로 정한다.